

일반공사계약 일반약관

제 1 조 (총칙)

(주)피엔알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계약자 _____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구매계약서에 기재한 _____ 계약에 관하여 제 2 조 1 항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공사계약일반약관, 윤리특별약관, 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설계서나 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이 사실을 도급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공지하고, 수급인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조 (작업결과 평가 및 Penalty 부과)

- ① 도급인은 작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의 종료를 결정하도록 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사고 발생시 Penalty 부과기준에 따라 Penalty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부과대상: 포항RHF공장 내에서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 및 교통사고
 - 나. 부과기준: 재해구분에 따라 차등부과(사망재해: 1백만원/건당, 일반재해: 2십만원/건당)
 - 재해발생 책임이 2 개이상 회사: 주 책임회사 100%, 보조 책임회사 50% 적용
 - 다. 안전사고 할증적용: 사고 은폐 시 10% 할증, 당해 년 2건 이상 발생회사는 10% 할증 적용

제 5 조 (손해배상)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지체, 불합격, 하자 등)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조업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 시킨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재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제 6 조 (종업원 및 고용원)

- ①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 본 공사에 종사하게 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수급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에는 노동 관련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 자재)

공사에 사용할 부품은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품명등은 반드시 공사설계서나 견적서(이하"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단,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 이여야 한다.

제 8 조 (하도급)

수급인은 도급작업을 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급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계약금액의 지급)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인의 공사결과 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정당한 지급불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하자담보 책임기간)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체상금)

-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지체상금율(1/1000)을 작업지시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도급인이 계약금액 입금시 공제하도록 한다. 단,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 대상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② 도급인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작업수행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작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 다.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2 조 (안전보건관리)

- ① 안전보건관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대하여 평가 및 감독하여 시정지시(권고)를 할 수 있다.
-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8호를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③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중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련 규정과 기준을 적용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산업재해(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발생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급인에게 통보한 후 유사재해 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해보상)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중 도급인, 수급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의 원인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환경오염의 방지)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의 환경관리기준 및 환경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급인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시설물의 철거 및 개조)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급인의 공장 부지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도급인의 승인없이 개조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영업비밀 보호)

- ① 수급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알게 된 도급인과 도급인의 고객의 시장정보, 기술정보, 제품정보, 업무상 비밀, 사업상의 기밀 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영업비밀”이라함)를 비밀로 유지하고,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는 도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계약이행 중이거나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영업비밀을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①항의 도급인의 영업비밀을 계약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제)

도급인은 본 계약상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Penalty 부과금, 손해배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액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교통수칙 준수)

수급인은 도급인의 공장단지 내에서 도급인이 정한 운송차량의 제한속도 기타 관련 교통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속, 과적 또는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저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출입관리기준 준수)

공사수행과 관련한 수급인의 소속 임직원 및 차량장비 등의 도급인의 공장 단지내 출입관리는 도급인의 출입관리지침에 따르며, 수급인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0 조 (규정의 준수)

수급인은 도급인이 시행하는 규정중에서 본 계약의 이행에 관련한 제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계약해제 및 해지)

- ①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 위임받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인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
 - 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종업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관계자에게 중퇴등 부정행위를 범한 때
 - 다. 안전보건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사고, 질병)가 발생한 때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해지 됨으로써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수급인과의 모든 계약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제 22 조 (윤리규정 준수)

도급인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준수내용 및 위반 시 제재는 윤리특별약관에 의한다.

제 23 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지정한다.

제 24 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다.